

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1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2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3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
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
		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	재료비 등		기 타
		인원	⑥ 금액	건수	⑦ 금액	건수
합 계						
계정 과목	구 분	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	⑪ 총 계 (⑥+⑦+⑧+⑨+⑩)
		건수	⑨ 금액	건수	⑩ 금액	
합 계						

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

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(=⑪)	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(⑭+⑮+⑯+⑰)	⑭ (직전 1년)	⑮ (직전 2년)	⑯ (직전 3년)	⑰ (직전 4년)
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(⑬/4)		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⑭+⑮+⑯)/3]		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⑮+⑯)/2]	
㉑ 증가발생액 (⑫-⑭)					

4 공제세액

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	중소기업	㉒ 대상금액(=⑪)	㉓ 공 제 율 25%			㉔ 공제세액 (㉒×㉓)
	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	㉕ 대상금액(=⑪)	㉖ 유예기간 종료연도	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	㉘ 공 제 율 종료 이후 1~3년차 15% 종료 이후 4~5년차 10%	㉙ 공제세액 (㉕×㉘)
	중견기업	㉚ 대상금액(=⑪)	㉛ 공제율 8%			㉜ 공제세액 (㉚×㉛)
	일반기업	㉛ 대상금액(=⑪)	공제율			㉝ 공제세액 (㉛×㉞)
			㉜ 기본율 0%	㉝ 추가	㉞ 계 (㉜+㉝)	
증가발생금액 공제 (직전 4년간 연구·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<⑱ 경우 공제 제외)	㉟ 대상금액(=㉑)	㊱ 공제율 %		㊲ 공제세액 (㉟×㊱)	*공제율 - 중소기업: 50% - 중견기업: 40% - 대기업: 25%	
㊳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중소기업 (㉔와 ㊲ 중 선택)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(㉙와 ㊲ 중 선택)		중견기업(㉜와 ㊲ 중 선택) 일반기업(㉞과 ㊲ 중 선택)			

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

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

구분	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
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
	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타		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'일반연구·인력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재료비 등의 "㉗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건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(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비를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2) 항목]
- 기타의 "㉘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·시험용 시설 임차(이용)비용을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3) 항목]
- 인력개발비의 "㉙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,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.
- 공제율의 "㉚ 추가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- ⑤, ⑥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- "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